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7. 27 선고 2015가단11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고1. A

2. B

피고1. C

2. D

3. E

4. F

5. G

6. H

변론 종결 2016. 6. 29.

판결 선고 2016. 7. 27.

주 문

1. 피고 F, G는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2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G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D, E,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① 원고 A에게,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C은 같은 목록 연번 8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는 같은 목록 연번 12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8. 2. 접수 제6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원고 B에게, 피고 H는 같은 목록 연번 16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C은 같은 목록 연번 19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 A의 조카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원고들의 소유였으나(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의, 연번 16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접수일자·접수번호"란 기재의 일시에 같은 목록 "현 소유자"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4. 12.경 후두부를 다쳐 2015. 3. 말경까지는 의식조차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들은 원고 A이 사망하기 이전에 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 A이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 A과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마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 A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당초 남원시 I 대지 149㎡를 피고 G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 H, D, C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H, D,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중대한 착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피고들은 이를 기화로 원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6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 B이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취소하므로 결국 위 각 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3. 원고 A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2014. 11. 28.경 넘어져서 후두부를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4. 12. 1.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후 원고 A이 2015. 2. 말경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2015. 3. 8.부터 2015. 4.

10.경까지 J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음식물 공급을 위한 삽관 시술까지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을 제5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2015. 4. 1. 및 같은 해 8. 12. 당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A의 증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이 피고 C, D, E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2015. 4. 1. 당시 원고 A은 전신쇠약, 기침, 가래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 A이 증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치매 등의 증세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온전치 아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2015. 4. 1. 무렵 주치의 등에게 직접 자신의 증상과 불편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2015. 7.경부터는 의식 및 기억력을 회복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 A은 그 이후인 2015. 8. 12. 피고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④ 한편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K이 그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원고 A과 법무사 K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친구 사이로서, 위 등기업무를 위임받을 당시 K이 직접 원고 A의 소유권이전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면에 무인까지 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 B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 H, D, C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기망을 당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보형

별지